

제2022-122호 2022년 12월 15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2-547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부지조성공사, 이일산업)	1
○ 여수시 고시	제2022-549호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신타피서지 시설개발사업)	6
○ 여수시 고시	제2022-55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라좌수영 동헌~여수공고 도로확장)	7
○ 여수시 고시	제2022-551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시장)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1
○ 여수시 고시	제2022-553호	여수 도시관리계획(굴전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2
○ 여수시 고시	제2022-554호	여수시 둔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15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2-3221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20
○ 여수시 공고	제2022-323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21
○ 여수시 공고	제2022-328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22
○ 여수시 공고	제2022-3288호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24
○ 여수시 공고	제2022-329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NPG RTO 신규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28

기 타

○ 여수시 규칙	제800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32
○ 여수시 규칙	제801호	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37
○ 여수시 규칙	제802호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6
○ 여수시 규칙	제803호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3
○ 여수시 규칙	제804호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6

회 람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22. 12. 15.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
 - 가. 성 명(변경): (당초) 이일산업(주) 대표 박병재
(변경) 이일산업(주) 대표 박병현, 공명식
 - 나. 주 소(변경없음): 여수시 삼동로 27-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가. 사업의 목적: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정유 및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원료로 아이소파라핀, 및 디아로마틱 용제, 친환경 가소제, 소형항공기 연료 및 보일러 연료유 등을 생산하는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나. 사업의 개요: 43,286㎡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여수시 주삼동 604번지 일원
 - 나. 면 적: 43,286㎡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10. 3.25.~2022.12.31.
(변경) 2010. 3.25.~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붙임1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8. 국 . 공유지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9.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붙임2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게재생략
11.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659-4014) 및 이일산업(주) 현장사무실(061-691-21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붙임1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		80필지			43,286			
1	주삼동	985-4	답	681	681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2	주삼동	988-15	답	33	33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3	주삼동	988-3	답	883	883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4	주삼동	988-14	답	52	52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5	주삼동	987-4	답	740	740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6	주삼동	986-4	답	773	773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7	주삼동	614-4	답	1,504	1,504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8	주삼동	999-2	전	116	116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9	주삼동	613-4	답	1,488	1,488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10	주삼동	999-9	도	336	336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11	주삼동	615-1	답	15	15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12	주삼동	612-4	답	1,543	1,543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13	주삼동	608-6	답	314	314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14	주삼동	605-2	답	1,104	1,104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15	주삼동	606-7	답	145	145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16	주삼동	605-10	답	1,751	1,751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17	주삼동	997-36	잡	188	188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18	주삼동	599-6	답	142	142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19	주삼동	600-10	답	75	75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20	주삼동	600-11	잡	76	76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21	주삼동	603-2	잡	7	7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22	주삼동	997-9	잡	54	54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23	주삼동	604	잡	20	20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24	주삼동	605-3	답	102	102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25	주삼동	605-4	답	158	158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26	주삼동	636-2	답	112	112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27	주삼동	592-2	제	1,203	134		국(농림수산부)	
28	주삼동	576-16	천	8,417	515		국(농림수산부)	
29	주삼동	602-5	답	3	3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30	주삼동	590-6	잡	216	216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31	주삼동	590-5	도	109	109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32	주삼동	590-4	전	624	624	여수시 삼동로 42	주정심	
33	주삼동	590-10	전	91	91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34	주삼동	산125-17	임	1,899	1,899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50, 117동 902호	백경민	
35	주삼동	586-14	전	99	99	여천시 주삼동 586-1	백만두	
36	주삼동	586-13	답	143	143	여천시 주삼동 586-1	백만두	
37	주삼동	644-3	도	1,586	126		여수시	
38	주삼동	586-23	도	18	18		여수시	
39	주삼동	산125-13	도	3,920	524		여수시	
40	주삼동	643	대	472	472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41	주삼동	643-21	대	43	43	여수시 삼동로 43	주정심	
42	주삼동	산125-21	도	12	12		여수시	
43	주삼동	590-7	도	96	71		여수시	
44	주삼동	643-18	대	63	16		여수시	
45	주삼동	643-17	대	110	110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6	주식회사이레	
46	주삼동	643-6	대	226	226	전남 여수시 주삼동 643	주식회사이레	
47	주삼동	643-14	도	495	495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48	주삼동	638	잡	3,430	3,430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49	주삼동	639	답	122	122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50	주삼동	640	천	87	87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51	주삼동	629	답	91	91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52	주삼동	631-4	답	148	148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53	주삼동	616	답	173	173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54	주삼동	620-1	답	132	132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55	주삼동	619-5	답	265	265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56	주삼동	618-7	답	107	107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57	주삼동	617	답	284	284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58	주삼동	616-3	도	99	99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59	주삼동	984	답	651	651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60	주삼동	983	답	220	220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61	주삼동	산130-25	임	219	219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62	주삼동	983-5	대	550	550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63	주삼동	산130-3	임	350	350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64	주삼동	617-1	전	897	897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65	주삼동	산128-7	임	793	793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66	주삼동	617-2	전	936	936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67	주삼동	산128-13	임	1,310	1,310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68	주삼동	988-13	답	1,570	1,570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69	주삼동	985-3	대	504	504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70	주삼동	산128-21	도	868	868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71	주삼동	985-5	도	74	74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72	주삼동	615	답	1,344	1,344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73	주삼동	612-3	잡	806	806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74	주삼동	636-1	답	2,245	2,245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75	주삼동	636	답	519	519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76	주삼동	637-1	잡	1,482	1,482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77	주삼동	997-12	구	678	678		국(국토교통부)	
78	주삼동	635	답	2,672	2,672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79	주삼동	634	답	1,190	1,190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9	이일산업(주)	
80	주삼동	592-4	제	681	112		국(농림수산부)	

■ 존치토지 명세서(변경) 붙임2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소유자	
합계		13개 필지			3,911			
1	주삼동	590-4	전	624	624	전남 여수시 삼동로 42	주정심	
2	주삼동	산125-17	임	1,899	1,899	전남 여수시 무선로50 117동 902호	백경민	
3	주삼동	586-14	전	99	99	전남 여수시 주삼동 586-1	백만두	
4	주삼동	586-13	답	143	143	전남 여수시 주삼동 586-1	백만두	
5	주삼동	643-21	대	43	43	여수시 삼동로 42	주정심	
6	주삼동	643-17	대	110	110	전남 여수시 삼동로 27-6	(주)이레	
7	주삼동	643-6	대	226	226	전남 여수시 주삼동 643	(주)이레	

8	주삼동	586-23	도	18	18		여수시
9	주삼동	644-3	도	1,586	126		여수시
10	주삼동	산125-13	도	3,920	524		여수시
11	주삼동	산125-21	도	12	12		여수시
12	주삼동	590-7	도	96	71		여수시
13	주삼동	643-18	대	63	16		여수시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12. 15.

여 수 시 장 (인)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 공원 결정 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228	신 덕 공 원	신덕동 677번지 일원	-	증)17,5 20	17,520	-	

■ 공원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8	신덕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분 : 신설 • 면 적 : 17,52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려한 해양 경관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해수욕장 개장에 맞춘 피서지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안) 도면: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 061-659-40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군자동	416	도	248	11	여수시					기정
1	군자동	416	도	248	11	여수시					변경
2	군자동	444-2	대	4	4	곽흥권	444				기정
2	군자동	444-2	대	4	4	여수시					변경
3	군자동	444-5	대	35	35	곽흥권	444				기정
3	군자동	444-5	대	35	35	여수시					변경
4	군자동	444-4	대	9	9	곽흥권	444				기정
4	군자동	444-4	대	9	9	여수시					변경
5	군자동	441-1	대	59	59	여수시					기정
5	군자동	441-1	대	59	59	여수시					변경
6	군자동	440-1	대	21	21	여수시					기정
6	군자동	440-1	대	21	21	여수시					변경
7	군자동	439-1	대	40	40	여수시					기정
7	군자동	439-1	대	40	40	여수시					변경
8	군자동	438-1	수	256	256	여수시					기정
8	군자동	438-1	수	256	256	여수시					변경
9	군자동	437-15	대	75	75	이용규	여수시 둔덕4길 46-19(둔덕동)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근저당	기정
9	군자동	437-15	대	75	75	여수시					변경
10	군자동	435	도	442	1	여수시					기정
10	군자동	435	도	442	1	여수시					기정
11	군자동	437-11	도	2	2	여수시					기정
11	군자동	437-11	도	2	2	여수시					기정
12	군자동	437-14	도	2	2	여수시					기정
12	군자동	437-14	도	2	2	여수시					변경
13	동산동	493-2	대	11	11	여수시					기정
13	동산동	493-2	대	11	11	여수시					변경
14	동산동	492-2	대	2	2	여수시					기정
14	동산동	492-2	대	2	2	여수시					변경
15	동산동	494	대	17	1	한희훈				미등기	기정
15	동산동	494	대	17	-	한희훈				미등기	변경
16	동산동	495-1	대	1	1	여수시					기정
16	동산동	495-1	대	1	1	여수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7	동산동	498-1	수	113	96	여수시					기정
17	동산동	498-1	수	113	96	여수시					변경

○ 지장물조사(변경)

- 기정

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군자동	444-2	창고, 화장실	시멘트, 벽돌	2.25㎡	서미자	여수시 군자4길 17-1				
			장독대	“	2.25㎡						
			마당		6.0㎡						
			계단	콘크리트5단	1식						
			대문	철재	1개소						
			담장	블록	12㎡						
			전기계량기		1식						
2	군자동	444-1	주택	스레트, 슬라브	42.25㎡	곽희중	여수시 봉산남4길 6-1				
			마당		15.0㎡						
			대문	철재	1개소						
			담장	블록	31.2㎡						
			수도		1식						
			빨래건조대		1개소						
			물탱크		1개소						
			계단	철재	1개소						
			보일러실	목조스레트	2.1㎡						
			차양	철파이프 스레트	1개소						
위성안테나		1개소	김용석	여수시 군자동 444-1							
3	군자읍	440	주택	벽돌 스레이트	60.5㎡	라병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길 27, 105호(충정로 3가, 총림에하임아파트)				
			가추	스레이트	15.0㎡						
			마루	목재	5.0㎡						
			대문	철재	1개소						
			마당		12.0㎡						
			담장	블록	12.8㎡						
			수도		2개소						
			장독대		12.5㎡						
			화단		21.0㎡						
			물탱크		1개소						
			화장실, 창고	스레트, 블록	14.5㎡						
위성안테나		1개	최한규	여수시 동산1길 13							
4	군자동	439	주택1층	조적조 슬래브	60.75㎡	김도경	여수시 동산1길 13-1(군자동)	박석순	여수시 서교1길 18		근저당
			주택2층	“	50.75㎡						
			창고	슬래브	4.50㎡						
			화장실	슬래브	2.16㎡						
			대문	철재	1개소						
			바닥포장	콘크리트	14.00㎡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물탱크	“	1개소						
			굴뚝	“	1개소						
			지하계단	콘크리트 5단	1식						
			지하실		8.00㎡						
			위성안테나		1개소						
			콘크리트 계단	14단	1개소						
			철재계단	11단	1개소						
			수도		2개소						
			동백나무		1주						
			무궁화나무		4주						
5	군자동	437-2	은행나무		1주	이용규	여수시 둔덕7길 46-19(둔덕동)	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근저당	
			사철나무		4주						
			담장	인조석	25.00㎡						
			참고	스레트, 블록	5.0㎡						
			대문	철재	1개소						
			셔터문	철재	1개소						
			마당	콘크리트	25.0㎡						
			담장	블록	27.0㎡						
			계단	콘크리트 2단	1식						
			수도		1개						
			무화과나무	R20	2주						
			무궁화나무	R15	3주						
			무궁화나무		2주						
			사과나무		1주						
자두나무	R15	1주									
자두나무	R5	1주									
6	동산동	495	-	-	-	홍준혁	여수시 둔덕7길 46-19(둔덕동)				
7	군자동	437-2	농사도구		1식	박소애	여수시 동산1길 14-5				
8	군자동	441-1	담장	블록	6.0㎡	(주)여수 개발	순천시 서면 삼산로 299				
			계단	콘크리트	1식						

- 변경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해	당	없	음				

여수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시장)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시장)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12. 15.

여 수 시 장 (인)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4	노외 주차장	돌산읍 평사리 산209-7번지 일원	6,052	감)669	5,383	여고-67호 '09.05.13	

■ 주차장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4	노외 주차장	· 주차장 변경 · 면적: 기정 6,052m ² → 변경 5,383m ² (감 669)	· 무술목지구 이용객편의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주차장 구역 계 조정

나.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봉산 시장	소매 시장	봉산동 274-4일원	3,308	감)3,308	-	건고-37호 '76. 3.27.	

■ 시장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봉산시장	· 구 분 : 폐지 · 면 적 : 3,308m ²	· 국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어울림복합타운) 추 진을 위하여 시장 폐지

2. 여수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시장) 결정 변경(안) 도면: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061-659-40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굴전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굴전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12. 15.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관리계획(굴전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 조서: 다음
2. 여수 도시관리계획(굴전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굴전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여수 도시관리계획(굴정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굴전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67,181.4	100.00	변경없음
	67,181.4	100.00	
시 설 부 지	44,985.9	66.96	변경없음
	44,985.9	66.96	
휴양시설 및 유흥시설	12,733.0	18.95	변경없음
	12,733.0	18.95	
편익시설	25,368.9	37.76	변경없음
	25,368.9	37.76	
관리시설	6,884.0	10.25	변경없음
	6,884.0	10.25	
녹 지	22,195.5	33.04	변경없음
	22,195.5	33.04	

나. 굴전유원지 조성계획(세부시설) 변경 조서(변경)

시설명	구분	부지면적 (㎡)	건축면적(㎡)				구성비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지상	지하				
총계	기정	67,181.4	14,614.96	25,806.77	22,270.45	3,536.32	100.00			
	변경	67,181.4	14,614.70	25,806.84	22,270.52	3,536.32	100.00			
시설부지	기정	44,985.9					66.96			
	변경	44,985.9					66.96			
휴양 시설 및 유흥 시설	소계	기정	12,733.0	3,943.39	6,346.79	6,346.79	-	18.95	주차장육상설치 (중복) L=350m B=4.0	
		변경	12,733.0	3,943.39	6,346.79	6,346.79	-	18.95		
	101동~ 115동 빌라형 숙박시설	기정	3,957.0	3,943.39	6,346.79	6,346.79	-	5.89		
		변경	3,957.0	3,943.39	6,346.79	6,346.79	-	5.89		
	테마공원	기정	8,776.0	-	-	-	-	13.06		
		변경	8,776.0	-	-	-	-	13.06		
	고카트체험장	기정	-	-	-	-	-	0.0		
		변경	-	-	-	-	-	0.0		
	편익 시설	소계	기정	25,368.9	10,578.07	19,366.48	15,830.16	3,536.32		37.76
			변경	25,368.9	10,579.83	19,368.57	15,832.25	3,536.32		37.76
전시장(대)		기정	4,250.0	4,238.15	10,038.62	8,515.81	1,522.81	6.33		
		변경	4,250.0	4,238.15	10,038.62	8,515.81	1,522.81	6.33		
전시장(소)		기정	1,210.0	1,200.12	1,285.60	1,285.60	-	1.80		
		변경	1,210.0	1,200.12	1,285.60	1,285.60	-	1.80		
주차장		기정	7,483.6	2,422.21	6,447.27	4,707.83	1,739.44	11.14		
		변경	7,483.6	2,422.21	6,447.27	4,707.83	1,739.44	11.14		
수영장		기정	1,430.0	1,422.89	-	-	-	2.13		
		변경	1,430.0	1,422.89	-	-	-	2.13		
야영장	기정	9,934.3	234.60	233.04	233.04	-	14.79			
	변경	9,934.3	236.36	235.13	235.13	-	14.79			
근린생활시설	기정	1,013.0	1,012.10	1,361.95	1,087.88	274.07	1.50			
	변경	1,013.0	1,012.10	1,361.95	1,087.88	274.07	1.50			
전망대	기정	48.0	48.0	-	-	-	0.07			
	변경	48.0	48.0	-	-	-	0.07			
관 리 시 설	소계	기정	6,884.0	93.50	93.50	93.50	-	10.25		
		변경	6,884.0	91.48	91.48	91.48	-	10.25		
	물탱크	기정	86.0	85.36	85.36	85.36	-	0.13		
		변경	86.0	83.34	83.34	83.34	-	0.13		
	도로	기정	6,789.0	-	-	-	-	10.13		
		변경	6,789.0	-	-	-	-	10.13		
	냉동창고	기정	9.0	8.14	8.14	8.14	-	0.01		
		변경	9.0	8.14	8.14	8.14	-	0.01		
	녹 지	기정	22,195.5	-	-	-	-	33.04		
		변경	22,195.5	-	-	-	-	33.04		

■ 굴전유원지 조성계획(세부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 설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편익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 건축면적 : 234.60㎡→236.36㎡(증1.76㎡) - 연 면 적 : 233.04㎡→235.13㎡(증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시공에 따른 면적변경
	관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탱크 - 건축면적 : 85.36㎡→83.34㎡(감2.02㎡) - 연 면 적 : 85.36㎡→83.34㎡(감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시공에 따른 면적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여수시 둔덕동 475-51외 6필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14.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시 둔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17 한국건설(주)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475-51 외 6필지
4. 사업개요
 - 가. 사업면적 : 26,135.00m²
 - 나. 건축면적 : 5,197.3208m²
 - 다. 연 면 적 : 30,765.9114m²
 - 라.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주5동, 180세대
5. 사업기간 : 2023. 3. 31. ~ 2024. 6. 30.
6.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등
 -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사

업시행자의 지정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바.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사.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659-4098)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중로	3	71	12	국지 도로	137	소2-139 둔덕동 475-6대	둔덕동 산164-4임	일반 도로	-	여고-193 (06.12.27.)	
변경	중로	3	71	13~14	국지 도로	151	소2-139 둔덕동 475-6대	둔덕동 산164-4임	일반 도로	-	여고-193 (06.12.27.)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71	중로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및 폭원 변경 L = 137m ⇒ 151m B = 12m ⇒ 1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원) 연립주택 진입로 개설 및 여수시립 요양병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구간 변경 (연장) 실제도로 연장반영(정정)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1)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둔덕정수장	둔덕동 475-6번지 일대	72,385.1	감) 43	72,342.1		

(2) ■ 수도공급설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둔덕정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축소 면적72,385.1㎡ ⇒ 72,342.1㎡ 감)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 3-71호선 확장 및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 면적축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여수시 둔덕동 475-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71) 사업
 - 나. 명칭 : 둔덕동 연립주택 진·출입로 개설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가. 사업시행면적 : 3,588㎡
 - 나. 사업규모 : L= 151m, B=13~1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한국건설(주) 대표 정진이
한국주택건설(주) 대표 정석우
 - 나.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17, 상가동 201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7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2. 12. (실시계획인가로부터) ~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허가민원과(061-659-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편입토지조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1	여수시둔덕동	471-75	임	356	35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코리아신타크 주식회사				
2	여수시둔덕동	471-82	대	397	39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코리아신타크 주식회사				
3	여수시둔덕동	471-101	임	7	7		여수시				
4	여수시둔덕동	475-68	수	1,502	1,502		여수시				
5	여수시둔덕동	475-69	전	650	650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3-8, 101동 1018호 (학동,아남아파트)	정석우	지상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근저당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6	여수시둔덕동	475-70	임	260	2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코리아신타크 주식회사				
7	여수시둔덕동	475-71	임	373	3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코리아신타크 주식회사				
8	여수시둔덕동	475-6	수	69,512	43		여수시				

○ 지장물조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종류	규격(㎡)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1	여수시둔덕동	471-75	임	콘크리트 슬라브 (경비실)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코리아신타크 주식회사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5.

여 수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258번지 일원 (구 죽림리 산13-7번지 일원)
-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 151번 근린공원)사업
 - 나. 명 칭: 상하금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준공 면적:** 61,943.4m²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죽림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조홍제
 - 나. 주 소: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13-36
-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가. 착수년월일: 2018.11. 8.
 - 나. 공사완료일: 2022.10.27.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5.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여수시 웅천동 1865-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 웅천공원)사업
 - 나. 명 칭: 웅천국민체육센터 진입교량 확보공사
3. 준공 면적: 38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가. 착수년월일: 2021. 7.15.
 - 나. 공사완료일: 2022.10.24.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체육지원과(061-659-3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15.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셀파 이엔씨(주) [곽정하]	여수시 신덕동 산160 지선 공유수면(9개소)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1,296㎡ (바지선 144㎡*9개소, 총 채취량 2.0412㎡)	허가일로부터 5개월
쥬이제이텍 [남순성]	여수시 신덕동 산160 지선 공유수면(1개소)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144㎡ (바지선 144㎡*1개소, 총 채취량 0.2268㎡)	허가일로부터 5개월

* 점용·사용 장소(위치 및 좌표)는 붙임1 참고

2. 공람장소, 공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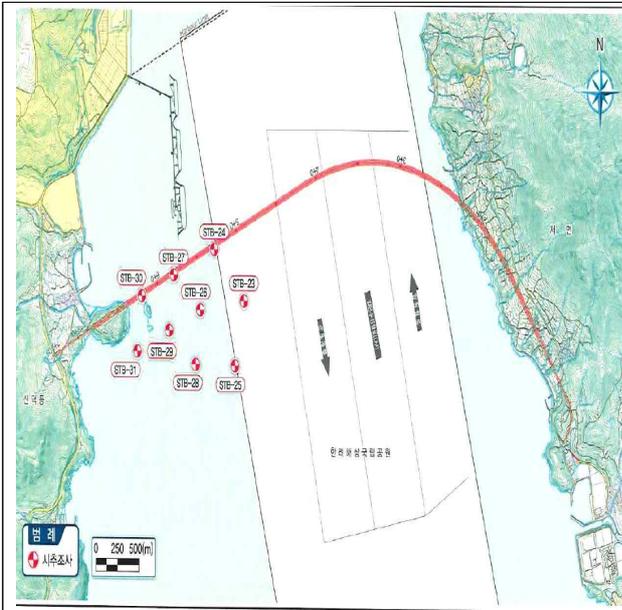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 공람기간: 2022. 12. 15. ~ 2023. 1. 3.(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2. 12. 15. ~ 2023. 1. 3.(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추어 제출
- 제출처: 해양항만레저과(여수시 신월로 648, 4층) 또는 전자우편(ds920724@korea.kr)
- 담당자: 연안관리팀 김동승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좌표



공번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좌 표(도, 분, 초)		비고
		위 도	경 도	
STB-23	신덕동 산 160 동측 약 1,2km	34° 49' 09.88"	127° 46' 32.26"	해상
STB-24	신덕동 산 160 북동측 약 900m	34° 49' 22.77"	127° 46' 34.49"	해상
STB-25	신덕동 산 160 남동측 약 1,1km	34° 49' 14.75"	127° 46' 46.84"	해상
STB-26	신덕동 산 160 동측 약 620m	34° 49' 27.56"	127° 46' 49.12"	해상
STB-27	신덕동 산 160 북동측 약 400m	34° 49' 06.94"	127° 46' 59.43"	해상
STB-28	신덕동 산 160 남동측 약 680m	34° 49' 19.54"	127° 47' 01.57"	해상
STB-29	신덕동 산 160 남동측 약 300m	34° 49' 33.85"	127° 47' 07.59"	해상
STB-30	신덕동 산 160 북북서측 약 60m	34° 49' 19.95"	127° 47' 11.94"	해상
STB-31	신덕동 산 160 남남서측 약 330m	34° 49' 06.81"	127° 47' 15.93"	해상

셀파이엔씨(주) 신청위치 및 좌표



공번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좌 표(도, 분, 초)		비고
		위 도	경 도	
STB-21	신덕동 산 160 북동측 약 1,29km	34° 49' 37.93"	127° 47' 22.74"	해상

(주)이제이텍 신청위치 및 좌표

공 고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미리 알려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자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2. 12. 13. ~ 12. 27. (15일간)
 2. 모집인원 : 6명 이내
 3. 위원역할 :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
 -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등
 4. 자격요건
 - 시민,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제출서류 : 위원 공개모집 지원 신청서 및 이력서 각 1부
 6. 접수방법 : 여수시 상수도과(☎659-4928) 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팩스(659-5859), 전자우편(ghhghk@korea.kr) 접수
- ※ 신청서 양식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다운받아서

용할 수 있습니다.

7. 선정방법 : 서면심사 후 적격자 위촉

8. 대상자 선정 통보 : 2022. 12. 30.(여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9.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 동일인이 3개 위원회 초과 위촉은 금지되며,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도 금지됩니다.(특수 분야 전문가 등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상수도과(☎659-492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 신청서

		접수 번호		
성 명	한글 :	연 락 처	집 :	
	한자 :		HP:	
생 년 월 일	(만 세)			
주 소	여수시 동 번지 (통 반)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	직장소재지			
	직 종			
여 수 시 거 주 기 간	. . ~ . . (년 월)			
각종 위원회 참여경력	위원회명	직위	기 간	비고
			. . ~ . .	
기타 특기사항				
<p>위와 같이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지원 신청 하오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2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붙임 : 1. 이력서(사진 부착) 1부 2. 경력증명 서류 1부			신청 수수료 : 없음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이면에 기재하여도 가능

사 진	이 력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등록기준지		
주 소		
년 월 일	학 력 사 항	학 교 명
년 월 일	경 력 사 항	기 관 명
년 월 일	포 상 및 형 별 사 항	기 관 명

이력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2년 12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 시 관내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공 사 명 : NPG #4 RTO 신규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나. 건 축 주 : (주)엘지화학

다. 시 공 자 : (주)씨제이종합건설

라.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중흥동 763번지

2) 대지면적 : 72,348.90㎡

3) 건축면적 : 287.02㎡

4) 용 도 : 공작물

5) 규 모 : 높이 23.25m, 1기

6) 공사기간 : 2022. 12. ~ 2023. 4.

7) 공 사 비 : 510,000,000원

8) 안전점검 비용 : 3,000,000원 (VAT 별도)

마. 건축허가일 : 2022. 12. 8.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항타기 및 항발기)의 정기안전점검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2-1860호

나. 결정방법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12. 15.(목) 09:00 ~ 12. 22(목) 16: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부가세 별도 금액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2. 12. 23.(금) 개별 통보(우선순위 2개 업체만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2개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2. 12. 27.(화) 16: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서식 2]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2. 12. 30.(금) 10:00~ 16: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산업지원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공고문에 명시된 과업범위의 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내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산업지원과(☎061-659-3795, 김현지 주무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1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15 일

여 수 시 장 전기명 

여수시 규칙 제800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는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

[별표 24]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요건 (제29조 관련)

부여 기준	배점	비고
<p>1. 담당업무관련 창안,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기여(각종 상사업비 수상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억원이상 0.6점 ○ 연간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0.5점 ○ 연간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4점 ○ 연간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 3명 이내(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무원) - 해당 업무 3개월 이상 근무자
<p>2. 국가예산 확보 기여(도비포함)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가예산(도비 포함) 확보에 기여한 직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비 합산 100억원이상 1.5점 ○ 국·도비 합산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점 ○ 국·도비 합산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0.5점 ○ 국·도비 합산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0.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 3명 이내(예산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무원) - 해당 업무 3개월 이상 근무자 ◦ 국고건의 신규사업, 공모, 생활밀착형 SOC 신규사업 중 국비, 도비 사업비만 포함 ◦ 균특회계(도자율), 연례반복사업 제외 ◦ 예산 확정 공문 통보 시 인정하며, 국도비 확보액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판단함(신규 사업에 한함)
<p>3. 업무 추진 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 표창</p> <p>【중앙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 상당 수상 0.6점 ○ 2위 상당 수상 0.5점 ○ 3위 상당 수상 0.4점 <p>【도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 상당 수상 0.4점 ○ 2위 상당 수상 0.3점 ○ 3위 상당 수상 0.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 3명 이내(수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무원) - 해당 업무 3개월 이상 근무자 ◦ 대상·최우수상 등 수상 명칭에 관계없이 시상 계획상 1·2·3위에 해당되면 가산점 부여 (시상계획 관련 공문 제출) ◦ 민간기관 단독 주관 또는 민간·공공기관 공동주관하는 시상은 가산점 적용 제외
<p>4. 정부합동평가결과 우수자</p> <p>【전남도 목표달성 지표 중 22개 시·군별 여수시 순위 1~3위 해당 우수지표 - 정량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 지표 (가중치 지표) 0.3점(0.6점) ○ 2위 지표 (가중치 지표) 0.2점(0.4점) ○ 3위 지표 (가중치 지표) 0.1점(0.2점) <p>【전국 우수사례 선정(도 후보) 지표 - 정성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우수사례 선정 0.6점 ○ 도 우수사례 후보 0.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 3명 이내(우수지표선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무원) - 해당 업무 3개월 이상 근무자

부 여 기 준	배 점	비 고
5. 격무·기피팀 근무자 ○ 1년 경과후부터 1개월마다 0.05점씩 가산	2점 한도	○ 근무평정일 기준 최근 선정된 격무·기피팀 근무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가산점을 이미 부여받은 기간은 공제하여 산정함
6. 감사 및 반부패·청렴 관련 우수공무원 표창 ○ 장관급 이상 ○ 도지사	0.5점 0.3점	
7. 공무원 시책연구모임 우수성과자 ○ 최우수상 (1위) ○ 우수상 (2위) ○ 장려상 (3위)	0.3점 0.2점 0.1점	○ 팀장 및 팀원 개인별 실적가산점 부여
8. 부패행위 신고 및 금품반환 신고자 ○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및 공금횡령 신고자 (매회) ○ 금품반환 신고자 (1 ~ 2회) (3회 이상)	0.4점 0.4점 0.6점	○ 감사부서 부패신고 등 접수대장에 의함 (사실조사 결과 근거)
9. 다 자녀 출산 공무원 ○ 넷째 이상 자녀 출산 공무원 ○ 셋째 자녀 출산 공무원 ※ 부부 공무원의 경우 2명 모두 인정	1.0점 0.7점	○ 출산 후 근무중 처음 도래하는 근무 평정시부터 당해 직급에 대해 적용
10. 각종 대회의 주도적 유치 ○ 국제 대회 ○ 전국 대회 ○ 도단위 대회	1.0점 0.5점 0.3점	○ 개인의 적극적인 활동과 주도적으로 기여한 것에 한하며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되는 통상적인 행사는 제외
11. 단체업무(공노조) 담당 공무원 ○ 2년 이상 ○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0.3점 0.2점 0.1점	
12. 청백봉사상·민원봉사대상 대상수상자	1.0점 이내	○ 당해 직급 수상에 한함
13.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 「여주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3 규정에 의한 배점부여 ※ 민자사업 유치 (50억원 이상, 1개소 이상) 중소기업 유치 (20억원 이상, 1개소 이상)	1.0점 ~ 0.2점	○ 투자사업 발굴에서 사업실현(착공)까지 적극적인 활동과 주도적으로 기여한 자에 한함
14. 나눔누리 사랑봉사단 평가결과 우수자 ○ 최우수상 (1위) ○ 우 수 상 (2위)	0.3점 0.2점	○ 팀원 전원 개인별 실적가산점 부여

부 여 기 준	배 점	비 고
15. 중앙부처 및 도, 관외 타기관 파견자 <input type="radio"/> 3년 이상 <input type="radio"/> 2년 이상 <input type="radio"/> 1년 이상	3점 2점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소재 기관 파견, 교육파견 제외 ◦ 당해직급에 한함 ※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시정 제안 채택 공무원 <input type="radio"/> 금상 (1위) <input type="radio"/> 은상 (2위) <input type="radio"/> 동상 (3위)	0.5점 0.3점 0.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관련 창안 채택자에 한함 - 공동제안의 경우 2인까지 가산점 부여 하되, 부제안자 1인은 주제안자의 1/2 인정 (당해직급 수상에 한함)
17. TOP성과 우수부서 지표(분야별 1위) <input type="radio"/> 일반행정, 복지환경, 지역개발, 읍면동	0.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 3명 이내(우수부서지표 선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무원) - 해당 업무 3개월 이상 근무자
18. 인구유입 실적 우수자 <input type="radio"/> 21명 이상 <input type="radio"/> 16명 ~ 20명 <input type="radio"/> 11명 ~ 15명 <input type="radio"/> 6명 ~ 10명 <input type="radio"/> 3명 ~ 5명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19.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input type="radio"/>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실적가산점을 부여하기로 의결된 경우에 한함	2.0점 이내	
20. 기타 특수 공적으로 실적가산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input type="radio"/> 조직의 헌신적 공헌, 시 이미지 제고, 특별·현안과제 업무추진 등 주도적으로 기여한 자	1.0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에 따라 타 가산점항목 부여기준 및 배점 준용

※ 비고

1. 평정대상기간 중의 실적에 대하여 부여한다. 단, 직전 평정대상기간 중에 해당실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평정대상기간 중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 항목에만 반영한다.(이중 적용은 불가)
3. 실적 가산점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반영한다

2022년 제1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
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15 일

여 수 시 장 서기영



여수시 규칙 제801호

붙임 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1부.

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1항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여수시 본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운영) ① 부설주차장은 시 소속 직원 및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평일 21: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2.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료운영시간(07:00부터 21:00까지, 이하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이유 및 변경된 유료운영시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이용시간 및 주차요금
2. 관리자의 연락처
3. 그 밖에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제4조(주차장 이용가능 차량) ①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1. 2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2. 2.5톤 이하 화물자동차
3. 공무수행 차량, 공사 차량, 소방·긴급 차량
4. 부설주차장 및 시 본청사에 사용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차량
5. 부설주차장 및 시 본청사에 개최되는 행사에 사용되는 차량

제5조(주차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5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부설주차장에 주차가능 공간이 없는 경우
4. 부설주차장의 입·출구 통과 높이 이상인 차량
5. ‘승용차 없는 날’ 등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미참여하는 차량
6. 부설주차장 내에서 영리행위에 이용되는 차량
7. 그 밖에 자동차 구조상 부설주차장의 이용이 부적합한 차량

제6조(주차요금 징수) 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 무료로 한다.
2.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 10분마다 200원씩 징수한다. 다만, 1일 1회 주차요금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유료운영시간 이후에 나가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한 시점부터 21:00까지의 요금을 징수하고, 유료운영시간 이전에 들어온 차량에 대하여는 07:00부터 나가는 시점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대상)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의 관용차량
2. 시 또는 시 의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이용되는 차량
3. 시 본청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고자 이용되는 차량
4.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외곽청사 및 다른 공공기관 직원의 공무수행에 이용되는 차량
5. 시 청사에 입주한 기관 및 단체의 공용차량
6.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7.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도·국회의원 차량
8.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제8조(월 정기주차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시 소속 직원
2. 본 청사에 입주한 기관 및 단체의 직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월 정기주차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할 당시 월 정기주차권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의 금액은 20,000원으로 한다.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부설주차장의 요금감면 및 그 대상에 관하여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2항, 제4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신용카드,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또는 현금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은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의 출입·출차 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차량번호 자동인식장치의 고장 등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진입시킨 후 주차요금이 발생하면 원격요금전송방식으로 계산한다.

제11조(자동차의 훼손·도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설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시의 관용차량을 제외하고는 부설주차장에 7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7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시간을 정하여 차량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차량소유자와 연락되지 않거나 차량소유자가 주차된 차량을 제2

항에 따른 시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동명령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일체의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13조(유료운영시간 외 관리) ①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관리자는 주차요금과 별지 제2호서식의 결산서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 본청사 당직근무자는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이후에 부설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징수요금 관리) 관리부서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한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다음날 시 금고 업무개시 즉시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로 수납된 요금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정산한다.

제15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내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설주차장 출입 차량은 안내표시 및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주차된 차량에는 귀중품을 두지 않는 등 그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도난 등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4. 부설주차장 입출입 통로 및 부설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5km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5. 차량은 부설주차장 내 구획된 주차공간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6.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에 혼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주차장 위탁운영)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자의 자격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 징수방법 변경
2. 주차장 이용자의 권리 또는 편의를 제한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No. _____

차 량 번 호		차 종	
발 견 일 시		주차 시간	
주 차 요 금		견인보관소	

위 차량은 72시간 이상 무단 방치(장기주차)하였으므로 「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주차장 관리자 : (인)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절 취 선

이 동 명 령 서

No. _____

차 량 번 호		차 종	
발 견 일 시		주차시간	
주 차 요 금		견인보관소	

위 차량은 72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견인보관소에 이동, 보관을 의뢰합니다.

※ 문의처 : 여수시청 회계과 ☎ 061)659-3221

년 월 일

여 수 시 청

[별지 제2호서식]

일 일 결 산 서

20 년 월 일 (요일)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주차현황

(단위:대)

구분	입 차	출 차	요금징수	면 제	감 면	월정기권	잔 류	비 고
금일								
월계								
누계								

주차요금 징수현황

(단위:원)

구분	계	신용카드	현 금	비 고
일계				
월계				
누계				

방치차량 이동현황

차량번호	발견일시	이동일시	주차요금	비 고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 :		

2022년 제1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15 일

여 수 시 장 정 기 병



여수시 규칙 제802호

붙임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02호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를 “법 제106조제1항”으로,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는”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4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5조제3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호(□) 중 “결손”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효완성정리

별지 제1호 서식 중 “감액·결손은”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액”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으로 하고 감액·결손은”을“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를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를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감액/결손”을 “감액/정리보류”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불납결손액”을 “불납정리보류액”으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중 “결손처분여부”를 “정리보류여부”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 [별지 제2호 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통지부
- [별지 제3호 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 [별지 제4호 서식] 수납부
- [별지 제5호 서식] 징수부
- [별지 제9호 서식] 정리보류표(갑), 정리보류표(을), 시효완성정리표(병)
-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 [별지 제11호 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 [별지 제13호 서식]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 [별지 제14호 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left: 2px solid black; border-right: 2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style="color: blue;"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style="color: blue;"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h3 style="margin: 0;">결정결의서</h3> </div> </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읍·면(동)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 [별지 제4호 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법인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수납구분 감액/정리보류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m²)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분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삭제)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m²)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여 수 시 장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략)</p> <p>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u>결손처리하고</u>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제13조(<u>결손처분</u>) 법 제106조에 따른 <u>결손처분</u>은 별지 제1호서식의 <u>결손 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호서식의 <u>결손처분표(갑, 을)</u>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4조(지난 회계연도 <u>결손처분</u> 취소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u>결손처분</u>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u>결손처분 취소액과</u>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재와 동일)</p> <p>② ----- -----시효완성정리하고----- -----.</p> <p>③ (생략)</p> <p>제13조(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정리보류는 ----- 정리보류 결정결의서 -----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p> <p>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u>별지 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u> 따른다.</p> <p>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시 이월액 정리)----- ----- 정리보류를----- ----- -- 정리보류 취소액과----- ----- -----.</p>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

정리보류를-----
-----.

제18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5조 3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현 행

■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부과
 신고납부
 감액
 결손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년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읍·면(동)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안

■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부과
 신고납부
 감액
 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년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읍·면(동)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정수결의일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	과표액	과세물건지					
생년월일	납세자명	전화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세목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정수결의일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	과표액	과세물건지					
생년월일	납세자명	전화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세목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결손처분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년 월 일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정리보류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년 월 일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삭제)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신설)

■ [별지 제11호 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설)

■ [별지 제12호 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	--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업무 수행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 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신설)

■ [별지 제13호 서식]

여수시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채납처분비					
합계					

끝.

여수시 **장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설)

■ [별지 제14호 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2022년 제7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양성
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15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규칙 제803호

붙임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기금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존속기한(2008년~2027년) 동안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한다.

제3조(지원대상)

1. 여수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u>제21조에</u> 따른 기금은 조례 <u>제23조</u> 및 부칙 <u>제4조제1항</u> 에 따른 존속기한(2008년~2017년) 동안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 ----- <u>제14조</u> ----- ----- <u>제16조</u> ----- ----- <u>(2008년~2027년)</u> -----매 회계연도 ----- --		
제3조(지원대상) ① (생략) 1. 여수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u>제24조</u>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 2. (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u>제17조</u> -----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2022년 제10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15 일

여 수 시 장 정 기 병



여수시 규칙 제804호

붙임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주구역별 경계 지정)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금주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금주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4. 그 밖에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주구역에서 금주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주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정리)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3조관련)

1. 표시방법

-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나. 안내표지는 날씨, 계절 등 환경변화와 폭우, 태풍, 우박 등으로 인한 파손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 다. 안내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 라. 안내표지 내용
 - 1)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 문자
 - 2) 위반 시 조치사항(과태료 부과 등)
 - 3) 그 밖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

2. 설치방법

- 가. 금주구역 안내표지는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 2) 그 밖에 금주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택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관리기준

- 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를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 나. 안내표지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 다. 안내표지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처리대장(제5조 관련)

연번	부과 번호	위반자인적사항						의견제출 일자	과태료부과 조치사항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의견 내용	부과일	부과 금액	납부일	납부 기한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